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길영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0

제출연월일: 2024. 2. 23.

발 의 자: 최길영 의원

찬 성 자: 김상용 의원, 이상걸

의원, 노미경 의원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수탁자 선정 및 위탁 업무 범위, 해수욕장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개정을 통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내 해수욕장의 내실 있는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정 내용의 성질 구분을 위한 4개 '장(章)' 신설 및 조문 이동
- 자구 수정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상위 법령 위임 등에 따른 조례 제정임을 명시(안 제1조)
- ○관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준수하여 위탁관리 운영의 내용 및 범위 등의 규정 정비(안 제6조)
 - 1.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보수 및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사항
 - → 1.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 상위 법령 불합치에 따른 수탁자 지정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7조)
 - ① ~ 경쟁의 방식 ~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처 수탁자를 지정한다.
 - → ① ~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 지정은 「울산광역시 울주 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수탁자 지정해지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9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과 불합치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관한 규정 삭제(별표)
-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1
- 나. 관계법령: 붙임 2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울산광역시 울 주군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환경을 보전·개선하고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이 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해수욕장의 관리 · 운영 등

제3조의 제목 "(해수욕장 관리계획)"을 "(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 중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해야 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을 "(개장기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를 "누리집 등에 고시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를 "군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관리·운영) 해수욕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제6조의 제목 "(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의 내용)"을 "(위탁관리·운영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 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보수 및 그와 관련 된 부수적인 사항"을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 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및 제3항(종전의 제 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영 제8조"를 각각 "영 제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탁관리 · 운영의 내용 및 범위"란"을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위 탁관리·운영의 내용 및 범위는"으로 한다.

- ①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 · 운영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해수욕장 관리 ·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는 위탁기간, 상호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위탁자의 지도·감독 권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7조의 제목 "(수탁자의 지정 및 지정해지)"를 "(수탁자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중 "군 공보 및 홈페 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를 "군 공보 및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로 한다.

① 군수는 해수욕장 관리 · 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 지정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 례 를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수탁자의 의무 등)"을 "(수탁자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를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해수욕장시설 사용료"를 "사용료"로 하고, 같은 항제3호 중 "그 밖에 군수가 해수욕장 관리 및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그 밖에 군수가 해수욕장 관리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리하거나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를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로 한다.

제11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0조를 제11조로 하며,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8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14조로 하며, 제10조의2를 제12조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3항 중 "게시하여야 한다"를 "게시해야 한다"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수탁자 지정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 1. 위탁계약에서 규정한 수탁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2. 군수가 정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 3.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과 다르게 관리 · 운영하는 경우
- 4. 위탁받은 관리 · 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

제10조(종전의 제9조)의 제목 "(사용료의 징수 등)"을 "(사용료 등)"으로 하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의 제목 "(사용료의 면제)"를 "(사용료 면제)"로 한 다

제12조(종전의 제10조의2)제2항 중 "제12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해수욕장협의회

제14조(종전의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 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2조)의 제목 "(해수욕장협의회의 설치)"를 "(설치)"로 하 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협의 를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 는"을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3조)의 제목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를 "(구성·임 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로 하 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울산해양경찰서장
- 5. 울산남울주소방서장

제17조(종전의 제14조)의 제목 "(협의회의 회의 등)"을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협의회의 회의"를 "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통보하여야 한다"를 "통보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협의회의 회의"를 "회의"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보칙

별표의 제목 중 "제9조 관련"를 "제10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중 공영 주차장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정 안 혅 했 개 <신 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지 해수욕장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의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울산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환경을 보전 · 개선하고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 적으로 한다. <신 설> 제2장 해수욕장의 관리 · 운영 등 제3조(해수욕장 관리계획) ① 군수는 |제3조(관리계획) ① ----법 제13조에 따라 기본계획의 범위 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 수립 · 시행해야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 ① 군 제4조(개장기간 등) ① ----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한 경우 개장 14일 전까지 울산광역시 울주 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 및 ----- 누리집 등에 고시해야 한

다.

(2)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8조 및 「해수욕장

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이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제 한 사유와 기간 및 시간을 지체 없 이 해당 해수욕장 게시판 및 군 홈 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 다.

는 해수욕장을 직접 관리 · 운영하 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 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해 수욕장 관리·운영업무의 일부를 위 탁할 수 있다.

제6조(해수욕장 위탁관리 · 운영의 내 용) <신 설>

<신 설>

	군 누리
	<u> </u>
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u>ㅂ ㅇ ㄲ ㅇㅗ에가 인기</u> .	

제5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 군수 제5조(관리・운영) 해수욕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되,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 · 운 | 제외하고는 군수가 직접 관리 · 운영 한다.

> 제6조(위탁관리 · 운영 등) ①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 율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8조제 1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 · 운영업 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해수욕장 관리 · 운영을 위탁할 경우 에는 위탁기간, 상호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위탁자의 지도·감독 권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위탁관리 · 운영 의 내용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ㆍ 보수 및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사 항
- 2.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에 대한 군 수가 정한 사용료 부과 · 징수에 필요한 사항
- 3. 그 밖에 군수가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에 따른 관리ㆍ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탁자의 지정 및 지정해지) ① 군수는 해수욕장 관리 · 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 경쟁의 방 식(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우선 수 탁자는 제외한다)에 의하고, 제12조 에 따른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탁자를 지정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 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

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체	결해이	: 한다.		

- ③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위탁관리 • 운영의 내용 및 범위는 ------
- 1.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 2. 영 제8조제1항-----
- 3. ----- 영 제8조제1항----

제7조(수탁자 지정) ① 군수는 해수욕 장 관리 · 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하 려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 고, 수탁자 지정은 「울산광역시 울 주군 사무의 <u>위탁 기본 조례」를 따</u> 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 른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우에도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을 거 쳐야 한다.

- ③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 1. 군수가 정한 사용요금을 초과하 여 징수하는 경우
- 2.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 적과 다르게 관리 · 운영하는 경우
- 3.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④ 군수는 수탁자가 지정되거나 해 지된 경우 그 사실을 군 공보 및 홈 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등) ① 수탁자는 제8조(수탁자 의무) <삭 제> 위탁받은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 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가격표시 와 표시가격 준수

지정할 수 있다.

<삭 제>

----- 군 공보 및 누리집에 공 고해야 한다.

-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 의 의무를 다하며,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현행과 같음)
 - 2. 사용료-----
- 3. 그 밖에 군수가 해수욕장 관리 3. 그 밖에 군수가 해수욕장 관리 및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

③ 수탁자가 시설물을 망실 • 훼손하 였을 때에는 수리하거나 그에 상응 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신 설>

- 제9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② (생 략)
 - ③ 해수욕장시설 관리 · 운영자는 사 용료와 사용 준수사항 등을 이용자 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 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면제) (생 략) 제10조의2(해수욕장시설 및 편의물품 | 제12조(해수욕장시설 및 편의물품 등

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 제9조(수탁자 지정해지) 군수는 수탁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 1. 위탁계약에서 규정한 수탁자 준 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2. 군수가 정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 3.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고 유 목적과 다르게 관리 · 운영하는 경우
 - 4. 위탁받은 관리·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등) ①·② (현행과 같 음)

----- 게시해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면제) (현행과 같음)

등 제공) ① (생 략)

② 제1항의 경우 <u>제12조</u>에 따른 울 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협의회 의 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 (생략)

<신 설>

- 제12조(해수욕장협의회의 설치) 법 제 20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13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 군수가 <u>임명하거나 위촉한다</u>.
 - 1. (생략)
 - 2. 울산해양경비안전서장
 - 3. · 4. (생략)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5조
,
<u>제13조</u>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3장 해수욕장협의회
제15조(설치)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
•
<u>제16조(구성・임기)</u> ①
특
~ 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
<u>도록 구성해야 한다</u> .
②
-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현행과 같음)
2. 울산해양경찰서장
3.·4. (현행과 같음)

- 5. 울산광역시 온산소방서장
- 6. ~ 9. (생략)
- ③ ④ (생 략)
- 제14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협의회 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된다.
 -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개최 사실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 할 수 있다.
 -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생 략)
- 제15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 제1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제16조 (생 략)

제17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제14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

5. 울산남울주소방서장	
6. ~ 9.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u>제17조(회의)</u> ① <u>회의</u>	
②	
	통보
<u>해야 한다</u>	
③ <u>회의</u>	
,	

④ (현행과 같음)

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제19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 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 ~ 3. (생략)
- ② (생략)

<신 설>

제18조 (생략)

[별표]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제9조 관련)

시설명	구	분	기 준	사용료
샤워장	소	인	1회	1,000원
	대	인	1회	2,000원
공영 주차장			무료	

※ 소인: 7세 이상 ~ 12세 이하(6세

이하 무료)

대인: 13세 이상

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 3.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4장 보칙

제20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별표]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시설명	구	분	기 준	사용료
샤워장	소	인	1회	1,000원
	대	인	1회	2,000원

※ 소인: 7세 이상 ~ 12세 이하(6세

이하 무료)

대인: 13세 이상

붙임1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다른 의안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2. 미첨부 사유

○ 상위 법령 및 관계 법령 불합치, 용어 정비 등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추 가 소요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고, 또한, 이미 시행되어 그 비 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에 해당함.

3. 작성자

○ 울주군의회 최길영 의원(☎052-204-4006)

붙임2

관계 법령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 · 일광욕 · 모래찜질 · 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 ·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 2. "해수욕장시설"이란 해수욕장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기본 및 기능시설
- 1) 백사장(모래, 자갈 등 토양의 재질에 상관없이 일광욕·모래찜질· 스포츠 등을 할 수 있는 육역을 말한다)
 - 2) 산책로
- 3) 탈의시설, 샤워시설, 화장실, 식수대, 주차장, 야영장, 공중이용통신시설, 차양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
- 4)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안전부표, 유영가능구역부표, 조명시설, 감시탑 등 안전시설
- 5) 오수·폐수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쓰레기집하·처리시설 등 환경시설
 - 나. 지원시설
 - 1)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등 행정시설
 - 2) 체육시설
 - 3) 판매·대여시설
- 다. 그 밖에 해수욕장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3. "해수욕장시설사업"이란 해수욕장시설을 신설·증설·개축·보수·복구 및 복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4. "물놀이구역"이란 물놀이 · 일광욕 · 모래찜질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부 표·안전선 등으로 구분되어지는 구역으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5. "수상레저구역"이란 주로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 저활동이 이루어지는 구역으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 다.
- 6. "관리청"이란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제3조(해수욕장 관리의 기본원칙) 해수욕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용 · 관리되어야 한다.
 - 1. 해수욕장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소중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도록 할 것
 - 2. 해수욕장은 어린이 · 노약자 · 장애인 등 모든 국민이 불편함을 겪지 아니 하도록 할 것
 - 3. 해수욕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 4. 해수욕장은 자연생태계와 경관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 도록 할 것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 에서 해수욕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 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수욕장의 환경 및 시설을 유지·개선·복구 · 복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해수욕장에서의 구조·구급에 관한 사항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 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해수욕장의 이용 ·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해수욕장의 지정 등

- 제6조(해수욕장의 지정) ① 관리청은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설 및 환경 기준에 적합한 구역을 해수욕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 설 보호구역은 제외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해수 욕장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 같은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 기관의 장 및 제20조에 따른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명칭 위치 · 주 요시설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7조(해수욕장 지정의 변경 및 해제)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정 · 고시된 해수욕장의 구역을 변경하 거나 그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 1. 연안침식, 지형의 변화 등으로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해 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2. 희귀생물의 서식지 보호 등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그 밖에 지정 후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해수욕장 지정의 변경 및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3 항을 준용한다.

- 제8조(해수욕장의 현황조사)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지정, 지정의 변경, 해제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 해수욕장에 대하 여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의 주기·방법·내용,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한다.

<제9조~제12조 생략>

- 제13조(해수욕장 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관할 해 수욕장의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다.
 - ② 관리청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관리청은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다.
 - ④ 관리청은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보에 고시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 제14조(관리계획의 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 1. 관할 해수욕장의 현황
 - 2. 관할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3. 관할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4. 관할 해수욕장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 5.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관할 해수욕장 관리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5조(관리계획의 변경 등) ① 관리청은 관할 해수욕장의 여건변화 등 불가 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관리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르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생략>

제4장 해수욕장의 관리 · 운영 등

- 제17조(해수욕장의 구역)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용도에 따라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수욕장 이용이나 운영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구역을 구분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 해수욕장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8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 청은 제20조에 따른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나 해수욕장의 환경보전 등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또는 개장시간을 제한할 수 있 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과 그 제한에 필요한 사항 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한다.
- 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① 해수욕장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운영 하여야 한다.
 - ②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해수욕장 관리 · 운영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 · 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지 역번영회 · 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수탁자로 지정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위탁받은 관리 · 운 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관리청은 수탁자가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관리 · 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 ⑥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 · 운영의 내용 및 범위,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의 기준·절차·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0조(해수욕장협의회) ①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 하여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해수욕장협의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둔다.
 - ② 해수욕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

- 제21조(사용료의 징수)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관리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한다.
-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 2. 관리청으로부터 비치베드,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 3.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 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해수욕장의 환경을 오염시 키는 행위
 - 5.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 6. 개장기간 중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 7.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도로교 통법 1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출입을 허용한 구역이 아닌 구역에 차 마를 진입시키는 행위
 - 8. 백사장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 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9.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10.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 기구를 조종하는 행위

- 11.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자갈·몽돌 또는 모래를 채취하 는 행위
- 12. 해수욕장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13.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 ·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로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 ② 관리청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판을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 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이용을 제 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3조(원상회복 등) ① 관리청은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 복, 시설물 등의 제거 또는 행위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아니 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또는 그 밖에 행위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요 청할 수 있다.

<제23조의2~ 제27조 생략>

- 제28조(해수욕장의 이용 제한 등)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 를 위하여 유해물질의 유입, 유해생물의 출현, 기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 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 만, 상황이 급박하여 협의할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발생

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게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해수면에서의 물놀이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소멸 되거나 완화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 ⑤ 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제4항에 따른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해제의 사실을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시·군·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29조~ 제46조 생략>

-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수탁자로 지정받은 자 1의2.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탁받은 관리·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재위탁하 자
 - 2. 제27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정비·보수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놀이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 또는 운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이하 부칙 생략>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제7조 생략>

- 제8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 청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 · 운영업무로 한다.
 - 1. 법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른 이용객 편의시설
 - 1의2. 법 제2조제2호가목4)에 따른 안전시설
 - 2. 법 제2조제2호가목5)에 따른 환경시설
 - 2의2. 법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른 체육시설
 - 3. 법 제2조제2호나목3)에 따른 판매·대여시설
 - 4.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시설
 - ② 법 제19조제3항에서 "지역번영회·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 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 다.
 - 1. 해당 해수욕장 주변의 마을회 등 지역번영회
 - 2. 해당 해수욕장을 어촌계의 구역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 에 따른 어촌계
 -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5. 「어촌·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 6.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제9조(해수욕장협의회에 참여하는 행정기관의 장)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 1.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 또는 해양수산출장소장을 포함한다)
 - 2.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 3.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기상대장
 - 4.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 5.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보건소장
 - 6.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제10조~ 제12조 생략>

- 제13조(해수욕장의 이용 제한)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유해물질의 유입, 유해생물의 출현, 기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유해 해양생물(이하 "유해해양생물"이라 한다)이 출현하였거나 출현할 우려가 있 는 경우
 - 3. 유해해양생물 외에 상어 등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해양생물

- 이 출현하였거나 출현할 우려가 있는 경우
- 4. 「기상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상(氣象)현상으로 기상이 악화되고 있 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 5.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상특보를 한 경우
-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 · 유행하고 있거나 발생 ·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 7. 이안류(離岸流) 등이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하 제14조~제24조 및 부칙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울산광 역시 울주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공공 · 민간의 참여기회를 확 대하고 통일적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위탁"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방식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수탁자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공위탁: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7조제2항에 따른 공 공단체 또는 공공기관(이하"공공단체 등"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방식

나. 민간위탁: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하는 방식

- 2. "위탁사무"란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 사무를 말한다.
- 3. "수탁자"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단체등과 법인등을 말한다.
- 4.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5. "재계약"이란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위탁사무 및 선정

제4조(대상사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 행정사무
- ② 제1항제4호의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 · 운영 및 관련 업무로 한다.
- 1. 복지 보건 건강 의료 시설
- 2. 문화·관광·체육·공원 시설
- 3. 교육, 공예, 공동체 관련 시설
- 4. 환경, 교통 관련 시설

- 5. 근로자복지, 취업지원, 직업훈련 관련 시설
-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3. 경제적 효율성
- 4. 수탁자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위탁계획) ① 군수는 제5조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위탁계획(이하 "위탁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하여야 한다.

- ② 위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위탁근거
-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 3. 범위·내용 및 타당성
- 4. 위탁기간 및 조건
- 5.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방법
- 6. 수탁자의 수입ㆍ지출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 예산
-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회 보고ㆍ동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사전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1.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탁사무로 의무화한 경우
-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 3. 청소, 방호 등 단순ㆍ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 4.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 ②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는 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위탁사무명
- 2.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3. 위탁사무 내용
-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5. 위탁기간
- 6. 수탁자 선정방식
- 7.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8.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 9.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 10.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 제8조(수탁자 선정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선정기준의 적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시설, 장비 및 기술 보유의 정도
 - 2. 재정 부담 능력, 책임 능력, 공신력
 -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 4. 사업계획의 타당성
 - 5. 고용승계 · 유지 및 근로조건
 - 6. 그 밖에 군수가 운영의 투명성·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제9조(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수탁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 ③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 위탁사무명, 수탁자의 명칭, 위탁기간 등의 사항을 포함한 수탁자 선정 내용을 군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위탁사무 선정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두며, 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 다.
 - 1. 수탁자의 선정(재계약 포함)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2. 수탁자 소속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탁사무 소관부서별로 해당 안건심의에 한정하 여 구성 · 운영한다.
-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제4항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제 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2명 이하로 하며, 노무 관련 외부전문가를 1명 이 상 포함한다.
 - 1.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 2. 울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 3.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세무사・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 다)에서 추천한 사람
 - 5.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람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최초 회의는 위탁사무 소관부 서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하면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을 할 수 있고,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또는 감정을 한경우
 -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 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 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위원 을 해촉할 수 있다.
 - 1.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 3.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 6. 위원이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제16조(수탁자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결과에 불 복하는 자는 수탁자 선정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문서 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 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 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다.
- 제17조(계약체결)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1. 사무위탁의 목적
 - 2. 수탁자의 성명(법인·단체일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및 주소
 - 3. 위탁사무의 명칭 및 내용

- 4. 위탁기간
- 5. 위탁운영에 필요한 보조 또는 지원비용
- 6. 수탁자의 의무
- 7.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8.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9.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사유 및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 10. 부정 사항 확인 시 환수 등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위탁사무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군수는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사무의 내용, 근거, 수탁자, 위탁기가 등을 군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8조(위탁기간) ① 위탁사무의 계약기간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 ② 군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자와 협의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9조(재계약)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1.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계약 조건 이행 여부
 - 2. 지도·감독 결과에 따른 조치의 이행결과
 - 3. 위탁사무 감사 결과
 - 4. 성과평가 결과
 - ③ 군수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종료일 60일 전까지 제7조제3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관리 운영

제2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고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의 부당징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다른 공공단체등과 법인등에게 양도 또는 전대(轉 貸)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중 그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를 제3자에 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⑤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고, 위탁사무 권한을 행사 할 때에는 수탁자의 명의로 한다.
- 제21조(사무처리의 지원) 군수는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군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 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22조(이용료 징수 등)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이용료, 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이하 "수입금" 이라 한다)을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수입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군수는 수입금의 일부를 수탁자가 군 지정 금융기관 계좌에 납입하게 하 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23조(사무편람)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 시하고, 사무처리 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 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 나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ㆍ점검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지도·감독 또는 검사·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 기간을 정하여 시정 등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등을 할 경우 수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25조(위탁사무 감사)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6조(위탁계약의 취소·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수탁자가 법령 및 조례 등을 위반한 때
 - 2. 수탁자가 제2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3. 제24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수탁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 ② 군수는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 회복,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7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평가, 감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군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주차요금 등) ① 법 제9조제2항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 장 요금 및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 2.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시간측정기・주차카드・주차표 등에 의한 방법으 로 한다.
- ② 삭제
-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차량
- 3. 공공 행사 · 회의 등 참석을 위해 군수가 사전에 승인한 차량
- ④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경감대상 자동차와 그 비율은 별표 1 의2와 같다. 다만, 경감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 그 중 경감액이 높은 것을 적용하다.
- 1. <삭제, 2022.12.29.>
- 2. <삭제, 2022.12.29.>
- 3. <삭제, 2022.12.29.>

3의2. <삭제. 2022.12.29.>

- 4. <삭제, 2022.12.29.>
- 5. <삭제, 2022.12.29.>
- 6. <삭제, 2022.9.8.>
- 7. <삭제, 2022.12.29.>
- 8. <삭제, 2022.12.29.>

- 9. <삭제, 2022.12.29.>
- 10. <삭제, 2022.12.29.>
- 11. <삭제, 2022.12.29.>
- 12. <삭제, 2022.12.29.>
- 13. <삭제, 2022.12.29.>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방법 이외의 공영주차 장관리 수탁자가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개정 2014.12.26., 2016.9.22., 2019.6.7., 2022.9.6., 2022.12.29.>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7조제1항 관련)

□ 그 밖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구분 (1구획당)	최초 30분 이내	30분 초과 10분 단위	1일 주차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평일	300원	100원	6,000원	50,000원